

高麗時代 ‘編戶’의 行刑體系 적용과 사회적 활용

전영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고려의 건국과 함께 이루어지는 제반 제도의 새로운 편성은 중세사회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시대적 가치 체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사회경영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통제는 통치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라말여초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변화된 계층구조에 상응하는 새로운 정치력의 실현은 『高麗史』의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특히 行刑體系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사회의 통제는 高麗律이 보여주는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고려율은 唐律을 모방하고 고려의 실정을 참작하여 제정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고려가 지난 사회적 체계의 특수성에 기반하며, 두 국가의 사회적 특성이 다른데서 기인한다. 특히 고려율에서만 보이는 형벌로 '除名流本貫'의 鏽鄉刑과 充常戶 및 充編戶의 실시는 법제적인 특성을 사회경제적인 통제로 전환하는 점에서 고려 사회상 파악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行刑體系의 하나로 표현되는 鏽鄉刑에 더하여 부가적인 형벌의 의미로 시행된 충상호·충편호는 죄를 범한 관리를 '보통의 호구(常戶)'에 충당한다는 뜻으로 파악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編戶의 의미가 常戶와 내용상 동일하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力役의 부담하는 사회경제적 기반의 호구 편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형벌체계에서는 신분사회의 특성을 활용하는 피지배층으로의 전락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편호제도를 형벌로 활용하였다는 것은 고려 사회를 지탱했던 형법의 특징이 당시의 경제적 가치를 수단으로 하여 시행된 독특한 行刑體系라 할 수 있다.

高麗時代 ‘編戶’의 行刑體系 적용과 사회적 활용

1. 머리말
2. 『高麗史』「刑法志」의 ‘充編戶’ 개념과 法制的 의미
3. 『高麗史』「刑法志」‘充編戶’의 사회경제적 기반
4. 맺음말

1. 머리말

고려의 건국과 함께 이루어지는 제반 제도의 새로운 편성은 中世社會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시대적 가치 체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사회경영의 효율적인 통제는 통치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羅末麗初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변화된 계층구조에 상응하는 새로운 정치력의 실현은 『高麗史』의 여러 곳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行刑體系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사회 통제는 高麗律이 보여주는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고려사』「형법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고려율은 唐律을 모방하고 사회 실정을 참작하여 제정되었다.¹⁾ 이것은 고려가 지닌 사회적 체계의 특수성에 기반하며, 두 국가의 사회적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고려율에서만 보이는 형벌로 ‘除

1) 『高麗史』 卷84 「刑法志」38. “高麗一代之制 大抵 皆倣乎唐 至於刑法 亦採唐律 參酌時宜而用之。”

名流本貫'은 지배계층인 관리들에 대한 통제책이자 归鄉刑이었다. 아울러 범죄행위의 누적에 대하여서는 '充常戶' 및 '充編戶'의 시행을 통하여 附加刑이라는 점에서 피지배계층으로의 신분적 강등을 의미한다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행형체계 내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이었던 戶口를 활용하여 형벌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지배계층의 특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형법상의 특징을 토대로 고려사회에 대한 이해는 신분사회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귀향형과 충편호형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게 주목되었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宦人的 경제적 기반과 관련한 접근²⁾이라는 연구나, 천민집단인 '鄉'과 관련하여 이해한 검토,³⁾ 당률과의 관계 속에서 귀향형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 연구⁴⁾ 및 고려성립기 지배신분층에 대한 여과장치로 이해한 연구도 있다.⁵⁾ 아울러 귀향형을 고려사회의 특성과 연계하여 그 의미를 분석한 연구와⁶⁾ 刑法志 자체에 대한 법제적 해석을 시도한 연구⁷⁾ 등도 주목된다. 이렇게 고려율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해석은 『고려사』 「형법지」가 지니는 의미들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고

2) 文炯萬, 「麗代「歸鄉」考」, 『歷史學報』 23, 歷史學會, 1964.

3) 北村秀人, 「高麗時代の歸鄉刑・充常戶刑について」, 『朝鮮學報』 81, 197
6.

4) 濱中昇, 「高麗にける唐律の繼受と歸鄉刑・充常戶刑」, 『歷史學研究』 483,
1980.

5) 蔡雄錫, 「高麗時代 歸鄉刑과 充常戶刑」, 『韓國史論』 9, 서울대, 1983.

6) 朴恩卿, 「高麗時代 歸鄉刑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研究』 79, 1992; 「고
려시대 除名과 士·庶의 신분질서」, 『인하사학』 10, 2003.

7) 申虎雄, 「高麗史 刑法志의 檢討」, 『素軒南都永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1984; 「高麗律의 行刑體系」, 『金甲周教授華甲紀念 史學論叢』, 1994; 「
高麗法制史研究」, 國學資料院, 1995; 정갑동, 「高麗王朝의 刑事制度 研
究」, 『학위논총 : 사회계』 14, 圓光大, 1985.

려사』 「형법지」에 보이는 ‘충편호’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행형체계의 하나로 활용하였던 고려율의 사회·경제적인 기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고려사회의 성격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2. 『高麗史』 「刑法志」의 ‘充編戶’ 개념과 法制的 의미

1) 「형법지」 ‘충편호’의 개념

고려시대의 백성은 모두 國役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국역이란 국가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말하며, 丁⁸⁾의 연령층에 있는 모든 백성이 대상이 되었다. 관인이나 군인·향리 등은 국가에 대해 특정한 職役을 부담하는 계층이었으며, 그 이외의 백성들은 稧役·貢賦·軍役 등을 부담하였다. 요역은 국가의 여러 공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이었으며, 공부는 지역의 토산물을 정부에 공급하는 것으로 역시 공물의 확보를 위한 노동력의 제공을 의무화하였다.⁹⁾ 이러한 役의 부과는 戶를 매개로 이루어졌는데, 『고려사』 「형법지」에는 역의 수취와 ‘편호’의 용어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기사가 보인다.

호구를 편성함에 人丁의 다음과 9등급으로 나누고 그 역의 부과를 정하였다.¹⁰⁾

8) 『高麗史』 卷79 「食貨志」2 戶口條. “國制 民年十六爲丁 始服國役 六十爲老而免役 州郡 每歲計口籍民 貢于戶部 凡徵兵調役 以戶籍抄定”이라 하여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

9) 朴恩卿, 「高麗前期의 移住」, 『高麗時代 鄉村社會研究』, 一潮閣, 1996, 29쪽.

이라 하여 편호의 편성과 기준에 따라 役의 부과를 정한다는 기사이다. 즉,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하여 호구의 편성과 함께 국가재정 확충을 위한 역의 징발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戶等制¹¹⁾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목 받는 기록이기도 하다.

위의 기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먼저 9등호제로 수취되는 '부역'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¹²⁾ 다음으로 9등으로 나누어지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의 문제는 편호에 대한 해석과도 관계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해석이 호등에 대한 편성, 또는 호등제 자체인지와,¹³⁾ 편호 자체가 인정의 다과에 따라 9등으로 나누어졌는지에 대한 해석이다.¹⁴⁾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는 『고려사』에 보이는 편호의 기사에서 살필 수 있다.

10) 『高麗史』 卷84 「刑法志」1 戶婚條 “編戶 以人丁多寡 分爲九等 定其賦役”

11) 戶等制의 성립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신라의 9등호제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金琪燮은 「新羅統一期의 戶等制와 孔烟」, 『釜人史學』 17, 1993에서 개별 자연호의 소유토지와 人丁 및 그 외 牛馬 등 재산의 규모에 따라 戶를 9등급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반면 李仁哲은 「新羅統一期의 村落支配와 計烟」, 『韓國史研究』 54, 韓國史研究會, 1986에서 신라의 9등호제는 토지소유의 차이만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의 호등제는 人丁의 多寡에 의한 9등호제라고 보아 왔다. 특히 姜普哲은 “고려의 賦役은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편성된 호등제에 기준을 두어 수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貢賦와 程役은 이 9등호제에 의하여 과정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高麗土地制度史研究』, 1980).

12) 金載名, 「高麗時代 役의 收取와 戶等制」, 『青溪史學』 1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에서 賦役의 실체를 기본 세목으로 분류하여 力役(正役)의 徵發로 보고 있다.

13) 崔弘基, 「高麗時代의 戶籍制」, 『韓國戶籍制度史研究』, 博士學位論文, 서울대, 1973에서 編戶를 戶等制 자체로 이해하고 있다.

14) 金載名은 위의 논문에서 '編戶'를 인정의 다과에 따라 9등으로 구분되는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朴恩卿은 앞의 논문(1992)에서 編戶를 호적에 편입되어 부역을 담당하는 戶를 의미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 ① … 마땅히 너희들 公卿將相으로 國祿을 먹는 사람들은 내가 백성을 사랑하기를 아들같이 여기고 있는 뜻을 잘 알아서 너희들 녹읍의 백성[編戶]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¹⁵⁾
- ② 감찰하는 관리가 금품을 훔치거나 또는 감찰할 때에 재물을 받고서 법을 어긴 경우에는 도형과 枝刑은 논하지 말고 그의 職田을 회수한 다음 시골로 돌려보낼 것이며 승려로서 절간의 미곡을 훔친 자는 시골로 돌려보내 보통 호구에 편입하고 관가의 물품을 매매한 자는 시골로 돌려보내는 외에 법에 의하여 죄를 줄 것이다.¹⁶⁾
- ③ 향, 부곡, 진, 역과 양계, 주진의 백성들은 승려가 되는 것을 금한다.¹⁷⁾
- ④ 秋 7월 丙子에 도병마사가 주청하기를 ‘于山國 백성으로 여진의 虐掠을 입어 도망하여 온 자는 예주에 두고 官에서 식량을 급여하여 아주 編戶를 삼으소서.’하니 이를 따랐다.¹⁸⁾

위의 기사는 편호에 대한 기사로 ①은 백성을 궁휼히 여기는 임금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백성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사례이다. ②는 지배계층이었던 관리들이 官의 물건을 빼돌리거나, 뇌물을 받았을 때 이를 경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시과에 부여된 職田을 회수하고 本貫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승려 또한 국가로부터 면세의 특권을 부여받았던 계층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다. 다만

15) 「高麗史」卷2 世家2 太祖2, 17年 詔, “夏五月乙巳 幸禮山鎮 詔曰 … 宜爾公卿將相 食祿之 人諒予愛民 如子之意 爾祿邑 編戶之氓。”

16) 「高麗史」卷84 「刑法志」職制條. “官吏臨監自盜 及臨監內受財枉法者 徒杖勿論 收職田 歸鄉. 僧人 盜寺院米穀 歸鄉 充編戶 貿易官物者 除歸鄉 依律科罪.”

17) 「高麗史」卷85 「刑法志」禁令條. “禁 鄉部曲津驛 兩界 州鎮 編戶人 爲僧.”

18) 「高麗史」卷4 世家4 顯宗 1, 13年. “秋七月丙子 都兵馬使奏 ‘于山國民 被女眞虜掠 逃來者 處之禮州 官給資糧 永爲編戶’ 從之.”

이 기사에서 관리들을 귀향으로 그치는 반면, 승려들은 귀향 후 편호한다는 점에서 관리들보다 더 무겁게 형벌을 부과하는 셈이다.¹⁹⁾ 특히 편호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신분을 들었다는 것이 특징으로 사료 자체가 『고려사』 「형법지」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사회경제적인 기반을 활용한 법제의 적용이라 볼 수 있지만, 편호가 호등제 자체였다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편호는 戶等 編成의 의미라기보다는 '編籍된 戶口'의 의미가 합당한 표현이겠다.

③의 기사는 피지배계층이나 특수 행정구역에 속한 백성들이 면세의 혜택을 받는 승려로 출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고려사회에서 승려로 출가하는 것에 대한 국가의 법률은 귀족의 자제나 향리의 손자로 출가를 제한함으로써,²⁰⁾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일반민이나 피지배계층의 이탈을 방지하여 국가재정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다. ④는 월경한 여진을 피해 들어온 우산국의 백성들을 백성으로 편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산국의 복속은 이미 신라 때의 일이긴 하나 고려 성종과 현종대에 이르러 지방에 대한 행정체계가 완성되어 간다는 점을 볼 때, 당시의 상황은 수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역민의 이동이라는 차원에서 해석될 만하다. 때문에 이미 고려 정부가 백성을 편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도병마사의 주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고려 정부의 호구 편성은 국초부터 진행되어 온 편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

19) 文桐萬은 常戶를 編戶의 의미로 보았으며 따라서 充常戶는 編戶에 충당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앞의 글, 29쪽). 北村秀人은 常戶를 鄉의 民으로 보고 充常戶는 단순한 鄉으로의 流配에서 나아가 해당자를 鄉의 호적에 등록해서 그 지역의 民으로 각아 내리는 것으로 보았다(앞의 글, 108-109쪽). 濱中昇은 充常戶가 國制上의 특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형벌로 보면서, 本貫이건 섬이건 행정구역과는 무관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았으며(앞의 글, 31쪽), 蔡雄錫은 充常戶는 형벌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充編戶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였다(앞의 글, 10쪽).

20) 『高麗史』 卷6, 世家6, 정종 2년 5월 辛卯.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므로, 형법지의 행형체계 또한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편호제도의 활용이라는 법제적 의미 외에도 고려 주변의 이민족의 入境에도 적용된 편호 기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겠다.

- ⑤ 日本國人 道要彌刀 등 20호가 들어와 의탁하였으므로 利川郡에 살게 하고 編戶하였다.²¹⁾
- ⑥ 10월 甲申에 西北女眞의 仍化老 등 13인이 투항하여 옴에 課戶에 충당함을 命하였다.²²⁾
- ⑦ 丙寅에 동여진의 正甫, 馬皮 등 48인이 정주관 밖에 들어와서 編戶되기를 청하거늘 토지와 집을 내려 内地에 살게 하였다.²³⁾
- ⑧ 8월 을미에 서여진의 漫豆 등 17인이 가족을 거느리고 들어와 의탁함에 예빈성이 주청하기를 '舊制에 본국의 변방민으로 일찍이 蕃賊에게 납치되었다가 고국을 생각하여 스스로 돌아온 者와 宋人으로 재주와 기능이 있는 자 이외에 黑水女眞과 같은 자는 모두 入住를 허락하지 않았사오니 지금 漫豆 등도 돌려 보내소서' 하니, 예부상서 盧旦이 주청하기를 '漫豆 등은 비록 무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義를 사모하여 있으니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山南州縣에 머물게 하여 編戶를 삼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²⁴⁾

21) 『高麗史』 卷3 世家3 穩宗 2年. “日本國人 道要彌刀等二十戶 來投 處之 利川郡 為編戶”

22)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6年 10月 甲申. “冬十月甲申 西北女眞 仍化老 等十三人 來投 命充爲課戶.”

23)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1, 6年. “丙寅 東女眞 正甫馬波等 男女四十八人 請入定州關外 為編戶 賦田宅 處之內地.”

24)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3, 35年. “八月己未 西女眞 漫豆等十七人 �挈家來投 禮賓省 奏曰 ‘舊制 本國邊民 曾被蕃賊 所掠懷土 自來者與宋人有才藝者外 若黑水女眞並不許入 今漫豆亦 依舊制 遣還’ 禮部尚書 盧旦 奏曰 ‘漫豆等 雖無知之俗 慕義而來 不可拒也 宜處之 山南州縣 以爲編戶’ 從之.”

⑨ 戊午에 여진의 龐工 古舍毛 등 6인이 들어와 의탁하거늘 집과
밭을 주어 편호에 채워 넣었다.²⁵⁾

⑩ 8월 대장군 최동수를 보내어 吾都止를 따라 몽고에 가게 하였는
데 奏에 대략하여 이르기를 '돌아보건대 小邦이 비록 전성한 때
에도 인민이 오히려 적었는데 하물며 신묘로부터 30년 동안 兵
疫이 서로 잇달아 죽어서 薫 당하는 일이 매우 많았고, 비록 이
제 編戶의 子遺[遺民]가 겨우 농사의 생업을 회복하였으나 그
兵衛(군대)에 예속한 것도 또한 장정과 날쌔고 용감한 자가 없
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칙령을 重驍하게 여겨 다방면으로 조사
하고 징발하여 겨우 1만인을 얻었고 그 舟艦은 이미 沿海의 관
리에게 위임하여 자재를 동원하여 만들게 하였나이다.'라고 하였
다.²⁶⁾

이들 기사들은 대부분 변방 이민족의 국적 취득이나,²⁷⁾ 일본
정벌 당시의 백성의 곤궁함을 설명한 것 등이다. 그러나 이들
중 ⑨의 기사에 보이는 '충편호'는 형법지에서 말하는 의미와는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형법지에서 표현하는 편호는 어디까지나
지배계층에 속한 이들에 대한 통제장치로 이해된다는 점을 전제
할 때, ⑨의 기사는 이민족 모직수공업자의 입경을 통해 고려의
수공업 분야에 편호로 충당한다는 의미라 생각된다. 이는 고려
가 국초부터 귀화 漢人을 우대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주목
할 만하다. 즉, 쌍기나 왕용 같은 한인 지식인들을 활용하였던
사실은 왕권강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

25) 『高麗史』 卷11 世家11 肅宗 1, 6年. “戊午 女眞 龐工 古舍毛 等六人 來
投 賦田廬以 充編戶.”

26) 『高麗史』 卷26 世家26 元宗 2, 9年. “八月 遣大將軍崔東秀 隨吾都止 如
蒙古 奏略曰: ‘顧惟小邦 雖在全盛之時 人民尚寡況 自辛卯三十年來 兵
疫相仍喪亡太多 惟茲編戶之子遺 僅復農畠之生業 其隸于兵衛 亦未有丁
壯驍勇者 然 重違帝勅 多方調發 僅得萬人 其舟艦則 已委沿海官吏 方
始庀材 營造.’”

27) 姜性文, 「高麗初期의 北界開拓에 대한 研究」, 『白山學報』 27, 白山學會,
1983, 39-57쪽에서 호구증식에 관한 논지로 이민족의 고려 국적의 취
득을 설명하고 있다.

다. 수공업자의 고려 정착에 대한 기사는 『宋史』에서도 확인되는데,

⑪ 희녕 7년(문종 28, 1074년) 과거에 고려 사신들이 오갈 적에는 모두 등주를 경유하였는데, 희녕 7년에 그의 신하 김양감을 보내어 아뢰기를 “거란을 멀리하고 싶으니 길을 바꾸어 명주를 경유하여 대궐에 이르겠습니다.” 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徽(고려 문종)가 또 표를 올려 의약 및 고려 사람을 가르칠 畫工·塑工 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니 羅拯에게 조칙을 내려,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⑫ 慶元 연간(명종 25~신종 3, 1195~1200년) 조칙을 내려 상인들이 동전을 가지고 고려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켰다. (고려) 왕성에는 중국 사람이 수백 명 있었는데, 장사 때문에 배타고 간 閩지방 사람들이 많았다. (고려에서는) 비밀리에 그들의 재능을 시험해 보고 벼슬을 주어 유혹하거나 강제로 체류시켜 일생을 마치도록 하기도 하였다. 조정에서 사신이 갔을 적에 (그들 중에) 첨을 올려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귀국하였다.

이와 같이 송과 무역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문제들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국초부터 고려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귀화 한인들과 같은 입장도 있었겠지만, 고려의 적극적인 인재 유치도 한 몫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앞의 ⑤~⑩의 기록은 여진과 일본인들의 적극적인 귀화 의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다르지만, 고려의 수공업자 유치는 고려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는 편호의 의미는 常戶나 課戶와 내용상 동일하다는 것이므로, 백성의 호적에 편성되어 국가에 대한 力役의 부담을 담당하는 戶의 편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형벌로서의 내용으로 보면 관리들에 대한 행형 체계의 하나로 표현되는 귀향형에 더하여 附加刑의 의미로 해석

되어 '보통의 호구(常戶)'에 충당한다는 뜻으로 파악되므로, 이는 관리들의 특권을 박탈하여 피지배신분층으로 신분적인 강등을²⁸⁾ 의미한다고 하겠다.

2) 行刑體系에 적용된 充編戶 사례와 法制的 의미

『고려사』 「형법지」의 규정에²⁹⁾ 의하면 편호·상호는 일반적으로 역을 부담하는 농민에 대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職制條에³⁰⁾ 보이는 편호의 개념에는 당시의 승려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승려 이전의 신분으로 돌려보내 本貫에 유치하고 국가가 정한 力役의 부담을 부과하는 신분적 강등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형벌의 효율적인 운용에 둔 체계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례는 軍人 또는 鎮인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³¹⁾ 적용되었다. 군역의무자인 군인이나 진인이 귀향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제자리에 유배케 하고 만약 田丁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에게 지급된 전정을 회수하여 타인에게 급여 한다는 것으로 보아, 군진이나 군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귀향을 명하는 것은 국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원래 근무지로 거주지 제한을 규제하는 것으로 그 사안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귀향 죄인들에 대한 사회적·법제적 대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³²⁾ 그들이 처한 형벌에 따라 자손들에

28) 朴恩卿, 「高麗時代 歸鄉刑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研究』 79, 1992.

29) 『高麗史』 卷84 「刑法志」1 戶婚條. “編戶 以人丁多寡 分爲九等 定其賦役”

30) 『高麗史』 卷84 「刑法志」 職制條. “官吏臨監自盜 及臨監內受財枉法者 徒杖勿論 收職田 歸鄉 僧人 盜寺院米穀 歸鄉 充編戶 貿易官物者 除歸鄉 依律科罪”

31) 『高麗史』 卷84 「刑法志」1 職制條. “判 鎮人 犯歸鄉罪者 仍留配本 處若受田丁者 收其田 與他”

32) 『高麗史』 卷74 「選舉志」2 學校條. “大小功親 犯嫁者 家道不正者 犯惡

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귀향은 곧 관리의 직분에서 파면조치를 의미하지만, 바로 서인과 같은 처지는 아니었다.³³⁾ 언제든지 사면을 통하여 중앙 관계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그 자손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고, 지방의 자손들이 중앙 진출을 꾀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거운 형벌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충편호라는 부가형의 존재는 행형체계 내에서 원래 본관으로의 귀속과 동시에 신분적 강등을 전제로 하는 범률임을 판단할 수 있다.

3. 『高麗史』「刑法志」‘充編戶’의 사회경제적 기반

행형체계의 하나로 나타나는 귀향형과 충상호 및 충편호의 개념 파악에서 중요시되는 사회경제적 기반은 國役의 의무를 부담하는가의 여부로 볼 수 있다. 죄인에게 주어진 형벌이 단지 귀향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리로 출사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名譽刑이지만, 부가형으로서의 충상호 또는 충편호가 집행된다는 것은 지배계층의 특권을 박탈하는 신분적 강등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編戶·常戶·課戶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당시의 호적에 편성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자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高麗의 제도 개편은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成宗年間(982~997)의 일이다. 이러한 제도 개편의

逆歸鄉者 賤鄉部曲人等子孫 及身犯私罪者 不許入學”

33) 박은경, 앞의 글, 2003, 253쪽.

결과로 이루어지는 戸部의 설치는 戶口, 貢賦 및 錢穀을 관장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호부의 기능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기사로는,

⑬ 나라의 제도에 백성이 나이 열여섯이 되면 丁이 되어 비로소 국역에 복무하고, 예순살이 되면 老가 되어 역에서 면제된다. 주군은 해마다 호구를 헤아려 백성을 호적에 올려 호부에 올리는데, 무릇 군사 징발과 역의 부과는 호적으로 뽑아 정한다.³⁴⁾

고 하여 16세에서 60세까지의 '丁'을 대상으로 국역에 복무하게 하고 해마다 호구조사를 하며 그 호적대장을 戸部로 보내고 稕賦의 징수를 위해 戸籍制를 실시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食貨志」에서는 위의 기록에 이어 1135년(仁宗 13)의 호적제에 관해서 기록하고³⁵⁾ 있는 것으로 보아 호적제는 이미 고려 초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³⁶⁾

이렇듯 고려시대에 있어서 호적제의 실시는 自然戶를 대상으로 하여 戶와 口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稕役의 징발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또 당시의 호적이 戶主를 중심으로 하는 현실적인 생활공동체인 家를 단위로 하여 口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호마다 편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³⁷⁾

호적제에 관한 여러 기록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려의 호적제가 갖는 기능의 변화이다. 원래 호적제의 기본적인 기능은 稕役의 부과를 위한 호구의 조사에 있었다. 그러나 고려

34) 『高麗史』 卷79 「食貨志」2 戶口條. “國制 民年十六爲丁 始服國役 六十爲老而免役 州郡每歲 計口籍民 貢于戶部 凡徵兵調 役以戶籍抄定”

35) 『高麗史』 卷79 「食貨志」2 戶口條. “仁宗十三年二月 判 居京大小人員子弟 謂避徭役 各於本貫親戚戶籍類付 以致名實混淆 自今京人付外籍者 痛禁”

36) 崔弘基, 「高麗時代의 戸籍制」, 「韓國戶籍制度史研究」, 博士學位論文, 서울대, 1973, 211쪽.

37) 崔弘基, 앞의 논문, 219쪽.

사회가 土族層과 庶人層을 기반으로 하는 신분제에³⁸⁾ 뿌리를 둔 봉건적인 지배체제였으며,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서 호적제는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점차 봉건적인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즉, '나라의 제도에 백성이 나이 열여섯이 되면 丁이 되어 비로소 국역에 복무하고…'라 한 기록과, 1134년(인종 12) 2월의 기록³⁹⁾ 중 '서울에 거주하는 대소인의 자제들이 요역을 회피하려고…'는 고려 초기의 국역 부담이 大小間에 걸쳐 모든 人民이 다같이 服役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1325년(충숙왕 12) 10월의 下敎⁴⁰⁾ 와 1371년(공민왕 20)의 下敎⁴¹⁾중에서 '아울러 옛 제도에 따라 양인·천인을 분간하여 호적을 작성하고…'한 것은 모두 服役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배층과 良賤의 신분을 호적에서 구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고려의 호적제도는 국초부터 말엽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제도로 작용하였으며, 국역의 부담 또한 이를 근거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호적제의 시행은 궁극적으로 고려 태조의 인구증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것에 있었다. 고려정부의 인구증가책에 대한 해법 중 하나는 이민족 동화정책의 일환이었던 귀화인 유인책을 적절히 구사하는 것에 있었다. 이 과정에 적용된 '충편호책'은 이민족을 고려의 국민으로 충원하여 국가에 대한 국역의 의무를 주고 고려민으로 융화시키는 병합과정이었다. 그리고 불안정한 北界지방의 防守와 함께 고토회복을 위한 북방개척과 병

38) 고려의 신분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39) 『高麗史』 卷79 「食貨志」2 戶口條. “仁宗十三年二月判: 居京大小人員子弟 謂避徭役 各於本貫親戚戶籍類付 以致名實混淆 自今京人付外籍者 痛禁”

40) 『高麗史』 卷79 「食貨志」2 戶口條. “開城府五部及外方州縣 以百姓爲兩班 以賤人爲良人 僞造戶口者 據法斷罪”

41) 『高麗史』 卷79 「食貨志」2 戶口條. “恭愍王二十年十二月 下敎 本國戶口之法 近因播遷 皆失其舊 自壬子年爲始 并依舊制 良賤生口 分揀成籍 隨其式年 解納民部 以備參考”

행된 정책이었다.

民戶에 충당될 귀화인에게 고려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租稅·徭役·貢賦의 의무를 주어 고려의 주권국민으로 흡수하려는 적극적인 귀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라말여초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감소한 인구의 보충이라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였다. 통일신라후기의 末期의 현상과 후삼국 시기의 잦은 兵亂은 인구의 대폭적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사회문화적인 것은 물론 경제적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⁴²⁾

이러한 이유로 고려 정부는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인구 증대 정책에 박차를 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인구의 증가는 급속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고려시대 같은 전근대사회에서는 병란과 질병, 기아 등의 이유로 인구의 증대는 급속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 같은 사정은 『宋史』 「高麗傳」의 기사로 확인되는데, 『송사』에서는 고려 전기의 인구를 2백 10만 여 명으로 추산하였다.⁴³⁾ 때문에 당시 고려는 인구를 증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귀화인을 적극 유치해서 편호에 충원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는 고려의 국익을 최대로 확장하려는 정부의 시책이기도 하였지만, 936년 후백제에 대한 공세를 펼칠 때에는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⁴⁾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고려는 후삼국 통일이전에 이미 북방민을 위무하고 귀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에 1만 여명의 말갈인 부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귀화인이 존재했음을 반증하는 사례가 아닐까 생

42) 김순자, 「고려시대의 전쟁, 전염병과 인구」, 『이화사학연구』 34, 2005.

43) 『宋史』 卷487, 外國3 高麗傳. “總之 凡三京四府八牧 郡百有十八 縣鎮三百九十一 洲島三千七百 郡邑小者 或只百家 男女二百十萬口 兵民僧各居其一” 한편, 박옥걸은 『고려시대 귀화인 연구』에서 고려인구의 수가 1340년 『송사』가 편찬된 해의 것보다 앞선 고려전기의 인구로 추정하였다.

44)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2년. “太相庾黔弼 元尹 官茂 官憲等 領黑水達姑鐵勒 諸蕃勁騎九千五百”

각된다. 각국 출신의 인적구성 속에서 말갈인만으로 구성된 부대가 별도로 편제된 것은 고려전기 이전부터 이미 대량의 북방민의 귀화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⁴⁵⁾

결국 고려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기반이었던 편호는 고려의 인구를 확대하는 것과 형법의 하나로 적용하였다는데서 특정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이라 할 수 있다. 지배계층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관인은 물론 특수 신분층이었던 승려에게도 적용하였던 것은, 폐쇄적인 신분사회였던 고려가 그 사회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호적제의 사회적 적용을 위한 수단이자 지배계층의 방종을 경계하는 장치로 활용함으로써 고려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였다.

4. 맷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編戶와 常戶 및 課戶의 개념은 동일한 의미로 쓰여 왔고,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 하나는 호적의 편성이라는 국가 경제의 기본 단위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향촌사회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는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행형체계 이전에 사회·경제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사용되어 왔음을 의미하며, 고려사회의 기본 단위를 파악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른 하나는 行刑의 부가라는 형벌의 의미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고려 형법의 성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당시의 경제적 가치를 수단으로 하여 성립된 독특

45) 이러한 사례는 고려 이전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통일신라의 중앙군인 9서당은 新羅人과 高句麗人으로 구성된 각각의 3개 부대와 百濟人の 2개 부대 그리고 鞏鞨人으로 구성된 1개 부대로 조직되었다(『三國史記』 卷40 잡지9 직관 하 무관 조).

한 行刑體系라 할 수 있다. 관리를 귀향시킨다는 것은 결국 왕성 밖으로의 축출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배 신분층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신분적 박탈이며, 정계에서의 몰락을 의미한다(除名流本貫). 또한 充編戶 또는 充常戶의 의미는 국가가 정한 戶籍에 입각하여 신분적인 제약을 가함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租稅와 賦役의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제약은 제도적으로 가해지는 형벌 이상으로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중한 형벌로 작용하였다. 즉, 고려 전기와 중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官階에 편성된 신분이거나 국가의 부역을 면제받던 자들에게 充常戶, 充編戶의 별을 부가한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신분적 강등과 함께 國租를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압박 수단임이 명백하다.

주제어 : 高麗律, 除名流本貫, 行刑體系, 歸鄉刑, 充常戶刑, 編戶

■ 참고문헌

- 강성문, 「고려 초기의 북계 개척에 대한 연구」, 『백산학보』 27, 백산학회, 1983.
- 김기섭, 「고려전기 호등제와 농업경영 규모」, 『부대사학』 18, 부산대학교, 1994.
- 김난옥, 「『高麗史』 형법지 禁令 편목의 내용과 성격」, 『한국사 학보』 44, 고려사학회, 2011.
- 김영하·허홍식, 「한국 중세의 호적에 미친 당송호적제도의 영향」, 『한국사연구』 19, 1978.
- 김순자, 「고려시대의 전쟁, 전염병과 인구」, 『이화사학연구』 34, 2005.
- 金翰奎, 「古代中國의 ‘編戶齊民’ 概念과 齊民論」, 『釜山女大史學』 第10·11合, 부산여자대학교사학회, 1993.
- 李俊九, 「조선중기 編戶白丁의 존재와 그 성격」, 『韓國中世史論叢 -李樹健教授停年紀念-』, 2000
- 文炯萬, 「麗代「歸鄉」考」, 『歷史學報』 23, 歷史學會, 1964.
- 朴恩卿, 「高麗時代 歸鄉刑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研究』 79, 1992.
- 朴恩卿, 「고려시대 除名과 土庶의 신분질서」, 『仁荷史學』 10, 인하대학교, 2003.
- 박종진, 「고려시기 경제운영의 단위와 지방제도」, 『한국학연구』 7, 숙명여대, 1997.
- 박종진, 「고려시대 부세제도 연구」, 학위논문, 서울대, 1993.
- 北村秀人, 「高麗時代の歸郷刑・充常戸刑について」, 『朝鮮學報』 81, 1976.
- 申虎雄, 「高麗史 刑法志의 檢討」, 『素軒南都永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1984.
- 申虎雄, 「高麗律의 行刑體系」, 『金甲周教授華甲紀念 史學論叢

- 』, 1994.
- 申虎雄, 「高麗法制史研究」, 國學資料院, 1995.
- 尹薰杓, 「고려시대 官人犯罪의 行刑 운영과 그 변화」, 『韓國史論』 33, 國史編纂委員會, 2002.
- 이경식, 「고대 · 중세초 경제제도 연구의 동향과 국사교과서의 서술」, 『역사교육』 45, 1989.
- 이경식, 「고려전기의 平田과 山田」, 『이원순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1986.
- 이병희, 「고려시기 경제제도 연구의 동향과 국사교과서의 서술」, 『역사교육』 44, 1988.
- 정갑동, 「高麗王朝의 刑事制度 研究」, 『학위논총 : 사회계』 14, 圓光大, 1985.
- 鄭甲同, 「高麗王朝의 刑事制度 研究」, 『學位論叢-社會系』 제14집, 원광대학교 대학원, 1985.
- 南仁國, 「高麗前期의 投化人과 그 同化政策」, 『歷史教育論集』 제8집, 경북대학교, 1986.
-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 '戶'의 編制와 성격」, 『大東文化研究』 40,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2002.
- 蔡雄錫, 「高麗時代 歸鄉刑과 充常戶刑」, 『韓國史論』 9, 서울대, 1983.
- 崔弘基, 「韓國制度史研究」, 『서울대논문집』 18, 인문사회과학편, 197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기초자료선집』 中世,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許興植, 「국보 호적으로 본 고려 말의 사회구조」, 『한국사연구』 16, 1977.

〈ABSTRACT〉

A Study on Applying Execution System of Pyeonho[編戶] and Social Utility in Goryeo Period

Jeon, Young-Joon

A new combination of various systems with the founding of Goryeo dynasty institutions age has been recognized as a new combination of contemporary value systems to pursue the implementation as the society of the Middle age. Especially, the management of effective control in the state and society was important goal setting the basic direction of the rul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era, realization of the new political power corresponding to the changed hierarchy is seen in many places. The control of society, especially through the efficient operating execution system can be summarized as characteristics showing Goryeo's legal code.

Goryeo's legal code(高麗律) was established by imitating Tang legal code(唐律) and taking into account the considerations of Goryeo's conditions. These characteristics are originated in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countries elsewhere being based on the particularities of the social system of Goryeo. Particularly visible only Goryeo's legal code punishment, conducting and understanding of jemyeongyubongwan(除名流本貫)'s gwihyanghyeong(歸鄉刑, banished from the capital on some charge), Chungsanghohyeong(充常戶刑), and chungpyeonho(充編戶) provide important clue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Goryeo considered in the socio-economic aspects of

the society.

In addition to gwihiyanghyeong(歸鄉刑) being expressed as one of the Execution System(行刑體系), chungsangho(充常戶), chungpyeonho(充編戶) as a means of added banishment may identify the means to cover the normal hogu(戶口, households). That is, the meaning of pyeonho(編戶) being the same sangho(常戶) or gwaho(課戶) in content, which means a combination of ho(戶, households) being responsible for yeok(役, a single individual the burden) in the country, which means being degraded to the subjugated class in punishment system, That pyeonho system used as a punishment is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law sustained Goryeo society can be the unique criminal system by means of the economic value at the time.

Key Word : Goryeo legal code(高麗律), Jemyeongyubongwan(除名流本貫), The Execution System(行刑體系), Gwihiyanghyeong(歸鄉刑), Chungsanghohyeong(充常戶刑), Pyeonho(編戶)

논문투고일 : 2012년 6월 11일 / 논문수정일 : 2012년 7월 10일 / 게재 확정일 : 2012년 7월 12일

